

|              |                    |
|--------------|--------------------|
| 의안번호         | 제 794 호            |
| 의 결<br>연 월 일 | 2018년 월 일<br>(제 회) |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              |
|-------|--------------|
| 발 의 자 | 박봉순 의원 등 6인  |
| 발의연월일 | 2018년 3월 14일 |

#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박봉순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794 |
|----------|-----|

발의연월일 : 2018년 3월 14일

발 의 자 : 박봉순, 최광옥, 연철흙,  
박한범, 이언구, 임병운,

## 1. 제정이유

- 2014. 9. 15.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의안번호 제2014-305호)을 반영하여 공공조형물 건립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공공조형물의 정의(안 제2조)
- 건립 비용부담(안 제5조)
-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안 제6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 관리 및 활용(안 제10조 내지 제1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와 협의함

나. 예산조치 : 관계없음.

라. 입법예고 : 2018. 3. 2 ~ 3. 12(10일간)

##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상징조형물(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등), 환경시설물(벽화, 분수대, 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조각, 공예 등)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공공조형물이 건립되는 공공시설의 관리부서 또는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공공기관의 장,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건립신청)**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도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건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승인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등 건립 및 유지·보수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기준)**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건축물, 조경 및 가로 시설물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
2. 공공조형물의 크기 및 설치부지 면적의 적정성
3. 내구성 및 안전성 등

제7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이전 및 교체·해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14조 내지 제21조의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8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또한, 건립주체가 도지사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 분석,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 하여야 한다.
3.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관리부서에서는 건립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건립주체에게 이를 통보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에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제9조(이의신청 등) ① 제8조제3호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한 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통보받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제10조(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상태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 필요한 보수조치 및 장기간의 보수일 경우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교체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되었거나 건립이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 서식]

## 건 립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추진기간 :

3. 사업개요

가. 규 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재 질 :

4. 작품설명

-

5. 제 작 자

-

6. 사 업 비

-

7. 사업비 조달계획

-

| <u>공공조형물 관리대장</u> |  |      |  |
|-------------------|--|------|--|
| 명 칭               |  | 건립일자 |  |
| 위 치<br>(공공시설명)    |  | 형 상  |  |
| 구 조               |  |      |  |
| 규 격               |  |      |  |
| 건립주체              |  | 관리기관 |  |
| 건립취지              |  |      |  |
| 인물 또는<br>사실 소개    |  |      |  |

(뒤쪽)

공공조형물의 위치(배치)도

공공조형물의 전면사진 (5" × 7")

## 관련법령 발취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

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부재산의 사용기간에 그 기부재산을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부서에 전대차(轉貸借)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1호

###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장 변 상 천